

1. 제정이유

기존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 본부 하부조직(안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2)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안전방재과, 교육활용과, 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3)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 근현대유산과, 수리기술과, 역사유적과, 역사문화권과, 유적발굴과,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및 고도보존육성팀 등 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4)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 동식물유산과, 명승전통조경과 및 지

질유산팀 등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 5)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 지정심사과, 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 기록과 등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안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28조, 제29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13까지)

- 1)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등 335명)의 정원을 둠.
- 2)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01명(특정직 47명, 4급 이하 등 54명), 국립고궁박물관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45명), 현충사관리소에 27명(4급 이하 27명), 칠백의총관리소에 11명(5급 이하 11명), 만인의총관리소에 8명(5급 이하 8명), 국립무형유산원에 21명(4급 이하 등 21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196명(고위공무원단(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등 195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76명(고위공무원단(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5명), 궁능유적본부에 215명(고위공무원단(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등 214명)의 정원을 둠.

- 3) 국가유산청 한시조직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4명
(4급 이하 4명)의 정원을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국가유산산업육성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둔다.
② 국가유산산업육성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산업 육성 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산업 부처 및 관련업계 협력체계 구축
3. 국가유산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 국가유산산업 통계 수집 및 관리(국가유산산업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육성 등 특수분류체계 수립 및 관리
6. 국가유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
9. 국가유산 R&D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0.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2.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표준화·유통 등 관련 사업의 추진
1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보급·표준화·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
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9.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산업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국정운영·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3. 국정과제·공약사항의 관리
4.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청장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8.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정계획의 총괄·조정 및 재원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1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조정·관리
 12.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사업)의 예산 편성·조정
 13.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에 관한 사항
 14.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6. 국가유산연감 등 국가유산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17.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를 및 보고사무 총괄
 18.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5.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조정
 6. 위임전결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8.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10. 총액인건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12.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의 조정·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갈등관리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1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7.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8.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9.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
 20. 청내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의 조정
-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 분야 규제·법무 정책의 수립·시행
 2. 법령안의 입안·심사
 3. 법령에 관한 자문·해석·회신에 관한 사항 총괄
 4. 입법계획의 종합·조정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5. 외국과의 협정·협약·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6. 법규집의 발간·편찬

7.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1.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3. 퇴직자의 취업 승인·제한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 ⑥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국가유산 기록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국가유산 디지털 기록화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6. 정보보호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
 7.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청내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9. 정보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및 평가
 11. 기록관의 운영과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의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계전산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행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통계 및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17. 시·도지정유산 관련 통계의 종합
 18.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1. 문화유산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2. 소속기관 기록화·정보화 업무의 지도·감독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7조(유산정책국) ① 유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안전방재과·교육활용과·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局)내 소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 국가유산의 분류·지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에 관한 체계적인 보호방안 수립·조정 및 총괄
6. 국가유산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표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존·관리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0.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총괄
12. 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불교계와의 협의 총괄
13. 국가유산관람료의 징수·감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15. 국유유산 종합 관리계획의 수립·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
 16.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도입과 운영·지원
 17. 국가유산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8. 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도·감독
 20.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안전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평가
 2. 국가유산 안전 정책의 수립·조정과 제도의 운영
 3. 국가유산의 재해·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5. 국가유산 방재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재난 예방에 관한 훈련·홍보 및 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8. 국가유산 재해·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9. 국가유산 재해·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부의 재해·재난 종합 훈련 중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총괄
 1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순찰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의 방충·방염 사업의 총괄
 13. 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14. 국가유산 재해·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5.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예방 및 방재 거버넌스 구축
 18.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예방 및 방재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
 19.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예방 및 방재 추진체계 고도화 추진
 20.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예방 및 방재 기술개발(R&D)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국가유산 기후변화 협력체계 구축
 22. 국가유산 기후변화 재난 통계관리
- ⑤ 교육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활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의 교육·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국가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활용 전략 수립·조정 및 시행
5. 국가유산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7.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 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10.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지원
11.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12. 국가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13. 문화유산지킴이 운동의 확산·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 보호 관련 청소년·청년 활동과 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기업의 문화유산 관련 사회공헌활동 지원·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18. 문화유산의 매입·관리·활용 등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0.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1.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4. 무장에 국가유산 관람·향유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25. 취약계층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사업에 관한 사항

26. 궁능유적본부·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감독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전문가 육성·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운영
11. 세계유산영향평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2.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
13. 세계유산영향평가 유관기관 및 유네스코 협의
1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⑦ 국외유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유산의 해외 홍보 및 국가유산청 영문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국가유산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국가유산 보존·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의 국가유산 분야 총괄
 9. 국가유산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11.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1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환수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소재문화유산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제협약·기구 활동 및 국외유산 환수 양자협정 체결 추진
17. 중장기 국외유산 활용 및 환수 계획 수립
18. 환수유산 관리현황 모니터링
19.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지도·감독

제8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근현대유산과·수리기술과·역사유적과·역사문화권과·유적발굴과 및 건축유산팀·민속유산팀·고도보존육성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국보·보물(동산문화유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보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6.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계획의 조정·총괄
7. 국보·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국보·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9. 국보·보물의 보호·관리 및 기초조사와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1. 국보·보물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보물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 제도의 운영·개선

13.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시·도지정 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과 동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동산문화유산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찰·문중 등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18.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유산 사범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20. 압수문화유산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2.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3. 공항·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유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5. 문화유산매매업 및 문화유산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7.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감독
 28.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사적등”이라 한다)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5. 사적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 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사적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7. 사적등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사적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등록말소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11.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운용에 관한 사항
12.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용·개선에 관한 사항
13. 고택 및 종가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해제 및 활용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보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18. 예비문화유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법령정비
 19. 예비문화유산 발굴·선정·조사 및 취소 관리
 20. 예비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활용계획 수립 및 디지털 전시 계획 수립
 21. 예비문화유산 관리, 보존 및 신고·허가 업무
 22. 예비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통계 및 홍보, 교육
- ⑤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제정·시행
 5. 국가유산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

승인·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자 및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의 기술지원

12. 국가유산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수리인력·임금통계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19. 문화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역사유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局)내 소관 역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4.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5.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6.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문화유산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8. 문화유산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9.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사적의 보수·정비 및 보수·정비·활용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2. 사적 등 역사유적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3.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5. 시·도지정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 및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17.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 ⑦ 역사문화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6.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의 발굴 및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7. 역사문화권 내 국가유산의 복원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2.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3. 역사문화권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 관련 사항
 14. 역사문화권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⑧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유산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매장유산 지표 및 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육성·지원

7.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8.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10.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장유산 기록 작성 등에 관한 보호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12. 지정되지 아니한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간 협의 총괄
14.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5. 발견·발굴된 매장유산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유산의 보관·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7. 매장유산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연구
18.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유산 조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20. 매장유산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문화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감독

⑨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보·보물(건조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보·보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보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국보·보물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국보·보물의 지정조사 계획의 조정·총괄

5. 국보·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7. 국보·보물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보·보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보·보물의 기초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보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 시·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과 국가유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형문화유산 자원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⑩ 민속유산טי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민속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총괄
6.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종합 보수·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9.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 시·도지정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민속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⑪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조정·승인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도 및 고도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4.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 안에서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도지역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8.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0.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 및 정기·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2.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고도지역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4. 고도지역의 시·도지정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도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자연유산국) ① 자연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동식물유산과·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6.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총괄
7. 비지정 자연유산 종합정책 수립
8.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 마련 총괄
10. 자연유산 주민지원·민관협력 및 민속행사 지원
1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연유산 디지털데이터 구축 및 공공데이터 저작권 관리
13. 자연유산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4.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대응 등 관계부처 협의 총괄
15.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16. 자연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시·도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자연유산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19. 천연기념물센터 전시·운영 총괄
20.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총괄
21.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기념물(동·식물, 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천연기념물(동·식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관리,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천연기념물(동·식물, 천연보호구역)의 공개제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증식·종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6.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관련 업무
7. 천연기념물(동·식물, 천연보호구역)의 기초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식물유산 치료 등 수리제도 고도화 및 수리기술자 교육 운영
10. 천연기념물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궁능유적본부 소관 천연기념물의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천연기념물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3. 천연기념물 보호단체·치료기관의 육성·지원

14.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5. 천연기념물 보호·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명승 지정·해제·보존관리,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명승의 기초·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명승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6. 문화경관 분류·지정기준 마련, 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재 및 한국의 경관·정원 세계화
7. 명승 및 문화경관 잠재자원 발굴 및 지정 추진
8. 근현대 경관 지정기준·제도 마련 및 목록화·지정 추진
9. 명승 관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책 및 주민지원
10. 자연유산 자원 중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복합경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12. 전통조경 기초·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지침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14. 전통조경 표준설계 마련·보급 및 수리체계 고도화
15. 전통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진흥 보존관리 정책
16. 전통조경 재료센터 운영관리
17. 전통조경공간 고증 및 표준모형 개발·보급,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18. 전통조경 육성 및 조성지원
19. 전통조경 국제박람회 및 해외 한국전통정원 조성 등 국제협력

⑥ 지질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질유산 지정·해제·보존관리,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지질유산 정책 기획, 법령 제·개정
3. 지질유산 분포지도(GIS) 구축 및 운영
4. 지질유산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질유산의 기초·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질유산 원형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홍보
7. 매장 지질유산 및 예비 지질유산, 유존지역 등 보존관리
8. 매장 지질유산 발견신고 관리
9. 매장 지질유산 지표·발굴조사 허가 및 보존조치 평가
10. 매장 지질유산 발굴 지원
11. 매장 지질유산 지표·발굴조사기관 등록 및 교육
12. 지질유산 표본 국가귀속, 표본 은닉·불법 매매 및 대여 단속

13. 지질유산의 국가귀속 및 표본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
14. 지질유산의 보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질유산의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6. 지질유산 공개제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질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8. 자연유산 자원 중 지정되지 아니한 지질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질유산 국가귀속 선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 대외 교류협력 및 세계유산(지질분야) 보존관리 대응

제10조(무형유산국) ① 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지정심사과·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

행

4. 시·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 이북 5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무형유산 자원 중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9.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10. 무형유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 전수교육관 건립·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무형유산의 해외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15.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감독
 16.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지정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및 취약종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전승지원금등의 제도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5. 전통예능 공연 지원
6. 국가무형유산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7.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시스템 구축·운영
8.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9.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 지원
10. 전승공예품 인증 및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지원,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⑥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

2. 무형유산(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4.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 콘텐츠의 제작·보급
9. 무형유산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조정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8.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사정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운영
1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7. 교수·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개인정보보호·관인관수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학과 평가제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6.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7.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8.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9. 학점 및 성적관리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 등(제2항제17호의2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2. 대학정보공시제 및 교육기본통계 운용 총괄
13.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5.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감독

17.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3.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기업의 시설,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수요조사·분석·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8.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9. 전통문화교육원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연구
10.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2.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개선
3. 문화유산 시책·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발간·배부·관리 및 교육기법·내용 연구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시행
9. 교수실·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운영
10. 교육생의 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15.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8.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9. 보안 및 관인관수
10.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 및 보존
11. 예산·회계 및 결산
12.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15. 관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6. 전시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의 운영
10.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收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출·격납과 등록에 대한 업무(구입·대여·기증·기탁·이관·국가귀속 등)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5. 궁중유물의 조사·연구·자료수집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궁중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복원·복제품 등의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조정·시행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 및 관인관수
7.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 및 보존
8. 예산·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전시 관련 기획·운영·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관리
1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수집 및 보관·관리
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 및 관인관수
9. 문서의 분류·접수·발송·심사·보존 및 관리
10. 예산·회계 및 결산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화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①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칠백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3. 무형유산 관련 사회·학교 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5. 무형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6. 무형유산 공연·전시의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형유산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8.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의 무형유산 보급·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무형유산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1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24조(소장)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5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공능유적본부

제26조(공능유적본부) ① 공능유적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공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7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세계유산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⑥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⑧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고, 이 중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공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장 한시조직

제31조(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고도보존육성팀 및 지질유산팀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건축유산팀장,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건축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민속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

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11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2

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9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립무형유산원”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3호 중 “국립무형유산원”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 서식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국립경주문화유산 연구소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대구광역시·경상북 도
국립부여문화유산 연구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 길 34	대전광역시·세종특 별자치시·충청남도
국립가야문화유산 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부산광역시·울산광 역시 · 경상남도
국립나주문화유산 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중원문화유산 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남한강로 38	충청북도·강원특별 자치도
국립서울문화유산 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서울특별시·인천광 역시·경기도
국립완주문화유산 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 로 75	전북특별자치도

[별표 2]

현충사관리소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현충사관리소 음봉분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고룡 산로 12-38	이충무공묘역

[별표 3]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4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41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7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7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
행정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임업주사	1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시설주사	6
방재안전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5

임업주사보	1
시설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11
운전서기보	3
학예연구관	8
학예연구사	22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민관협력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재난 · 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

[별표 3의2]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5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350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7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7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 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
행정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임업주사	1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시설주사	6
방재안전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8

임업주사보	1
시설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
운전서기보	3
학예연구관	8
학예연구사	22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민관협력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재난 · 안전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발굴행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사범단속 담당)	1

[별표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총계	101
특정직 계	47
총장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8
조교	8
일반직 계	54
서기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	6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8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4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2
사서서기	1
임업서기	1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3
방호서기보	2
운전서기보	2
기록연구사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전문경력관 나군(기숙사관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안전관리 담당)	1

[별표 5]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46
일반직 계	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6

학예연구사	17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5의2]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47
일반직 계	4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전산주사보	2
공업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6
학예연구사	17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6]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5항 관련)

총 계	27
일반직 계	2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방호주사보	1
행정서기	1
임업서기	2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 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8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2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별표 7]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6항 관련)

총계	11
일반직 계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1
기계운영서기보	1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

[별표 8]

만인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7항 관련)

총계	8
일반직 계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별표 9]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8항 본문 관련)

총계	21
일반직 계	2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전산주사·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3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

[별표 9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21
일반직 계	2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전산주사·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3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 담당)	1

[별표 10]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9항 관련)

총 계	196
일반직 계	19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93
전문경력관	2

[별표 1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0항 관련)

총계	76
일반직 계	7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소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75

[별표 12]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1항 관련)

총계	215
일반직 계	2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본부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204
전문경력관	10

[별표 13]

국가유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2항 관련)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관	1